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
-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마.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안 제8조)
- 바.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 위원회 위원 등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아.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11조)
- 자. 운영세칙(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전화 : 02) 450-7263, FAX : 02) 3425-1719, 이메일 : 2514j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